

서울특별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 
전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□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장님!

그리고 선배 · 동료 위원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 국민의힘 윤영희 의원입니다.

□ 「서울특별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
□ 지금부터 본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103호

「서울특별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.

□ 스토킹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여전히 피해자 보호에 관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추가적인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.

□ 2023년 제정된 상위법인 「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과 일치하도록 현행 조례를 재정비하여 법적 정합성을 제고하고, 스톱킹 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□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,

아무쪼록, 이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
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